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 완화 건의**

2022. 2.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 완화 건의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 기술인력 기준 |
|--|
| ① 기술사, 기능장 ② 석사 + 경력 3년 ③ 기사 + 경력 5년 ④ 산업기사 + 경력 7년 ⑤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운반업,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종업원 10인 미만 사용업 또는 판매업의 경우 제외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의 자격유효기간 : ~2023.12.31까지 |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을 대·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음.
- 즉, 관련업계 최고 자격요건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경력기간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으나 석사는 경력3년, 기사는 경력5년, 산업기사는 경력7년을 갖추어야만 사업장에서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는 경력기간 없이 채용가능하나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수준 및 근로환경은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현장인력, 특히 전문인력 채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지역의 기술인력 풀(Pool)은 진입장벽이 높아 상당히 적은데다 연봉에 따

라 이직이 잦아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이 제시하는 고액연봉 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고위급 임직원과 임금 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화학물질관리법 상에는 기술인력 경력기간을 일일이 명시해 두고 있어, 실제로 해당 자격증 취득자 중 법에 제시된 기간보다 경력이 짧지만 해당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정한 경력기간을 충족해야해 구인공고를 내어도 짧은 기간 내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더 어려움이 큰 상황임.
-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중소기업 기술인력 기준 일괄 적용으로 인한 부담 증가’, ‘전문 기술인력 채용 및 확보 어려움’ 등 애로사항과 ‘화학물질 관련 학과 외 유사 학과 출신도 인정’ 등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대책건의

-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환경 차이는 물론, 근로자 임금격차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